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679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9월 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“한부모가족지원센터”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,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한부모가족 사업의 전문성, 경험, 인적·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

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

2) 위탁기간 : 3년(2022.1.1. ~ 2024.12.31.)

3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한부모가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,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 필요

4)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

-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
-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
- 그 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5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, 4층
- 규모 : 전용면적 385.75m²
- 시설현황 : 상담실, 보육실, 교육실, 자조모임실, 사무실 등
- 인력현황 : 10명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6명)
- 개소일 : 2009. 2. 1.

6)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7) 소요예산 : 금1,608,087천원('21년 예산)

- 사무관리비 : 50,000천원
- 민간위탁금 : 1,493,087천원
- 민간위탁사업비 : 65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의 위탁)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(2012.7.) 후 6년¹⁾이 경과하여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²⁾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³⁾을 추진하고자,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⁴⁾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
-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-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- 그 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1) 위탁기간 2019.1.~2021.12.사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(2019.3.28.)되어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이 제출됨.

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 3. 25.>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 3. 28.>

-이하 생략-

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,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09년부터 총 4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음.

<센터의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경과>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위탁법인 :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
- 위탁기간 : 2019.1.1.~2021.12.31.(3년)
- 운영인력 : 총 10명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6명)
- 소요예산 : 금 1,608,087천원('21년)
- 추진경과
 - 1차 : 2009.2.~2012.12.(11개월, 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)
 - 2차 : 2013.1.~2015.12.(3년,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)
 - 3차 : 2016.1.~2018.12.(3년,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)
 - 4차 : 2019.1.~2021.12.(3년,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)
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⁵⁾결과 공통사무평가(사업인프라, 사업활동), 개별사무평가(사업성과, 지도점검 이행노력), 사용자만족도평가(만족도 제고노력)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84.85점으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(재위탁)으로 의결되었음.

5) 평가기관 : 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

<종합성과평가 종합 점수>

평가영역	평가범주	평가지표	득점
공통 사무 평가	사업인프라	조직 및 인력 운영	3.95
		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	4.06
		사회적 가치기여	8.05
	사업활동	사업계획 집행수준	7.63
		사업활성화 개선노력	6.90
개별 사무 평가	사업성과	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	14.09
		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	9.40
		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및 사회환경 조성	9.23
		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	2.55
	지도점검 이행노력	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	3.00
		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	3.70
사용자 만족도 평가	만족도 제고 노력	시민만족도 평가결과	12.29
합계			84.85
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 위생방역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대응 노력을 하였으며, 민간전문가의 Pool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요청사항이 있음.

<주요 성과평가 결과>

우수사항 공통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집행을 측면에서는 민간위탁금 총괄 집행율이 거의 99%로 나타나고 있으며, 분기별 예산과 결산이 지급시점별로 대부분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측면은 타 기관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
우수사항 사업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부모 자녀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음. 기업의 후원을 통해 출산육아용품, 건강지원, 육아생활지원,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• 코로나 19로 가사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자 한부모 가정에 위생방역 꾸러미 제공, 정리수업을 위한 분리수거대 비치 등의 특화서비스를 진행한 대응 노력이 우수함

개선요청사항 공통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가치 제고구매액 비중이 대폭 감소한 실적(36.4%에서 4.3%)은 점차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며, 타 기관에 비하여 민간전문가의 Pool이 수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, 민간전문가의 Pool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
개선요청사항 사업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홈페이지 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접수 신규 페이지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.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함

□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

- 2019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족은 1,529,151가구, 저소득한부모는 205,965가구이며, 서울은 한부모가족 301,794가구, 저소득한부모 32,407가구임.

<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(전국, 서울)>

(단위 : 가구, %)

구분	연도	총가구수(A)	한부모가족(B)	비율(B/A)	저소득한부모(C ⁶⁾)	비율(C/B)
전국	2019	20,891,348	1,529,151	7.3%	205,965	13.4%
	2018	20,499,543	1,539,362	7.5%	209,462	13.6%
	2017	20,167,922	1,533,166	7.6%	210,866	14.5%
서울	2019	4,043,957	301,794	7.4%	32,407	10.7%
	2018	3,981,741	306,902	7.7%	34,824	11.3%
	2017	3,984,850	309,868	7.8%	36,178	11.7%

출처 : 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」,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

- ‘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⁷⁾’ 결과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.6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가처분 소득(389만원)의 56.5% 수준이며, 한부모의 장시간근로로 인해 일·가족 양립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와 시간이 없어서 의료서비스 이용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
6) 저소득한부모(C)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+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

7) 여성가족부(2018),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.

-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과 자녀의 부적응,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, 이들을 위한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지원과 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을 하고 있음.

□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

-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, 시설 및 기관에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을 개발, 보급하며 교육 및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력이 필요하며, 이에 현장경험과 해당분야 실무와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.

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지원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동 조례 제13조⁸⁾에서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8)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교육 및 운영컨설팅 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,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4 종합 검토 의견

- 본 동의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,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임.
-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7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“한부모가족지원센터”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,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한부모가족 사업의 전문성, 경험, 인적·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나. 위탁기간 : 3년(2022.1.1. ~ 2024.12.31.)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한부모가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,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 필요

- 라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
-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
 -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 -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 - 그 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, 4층
- 규모 : 전용면적 385.75㎡
- 시설현황 : 상담실, 보육실, 교육실, 자조모임실, 사무실 등
- 인력현황 : 10명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6명)
- 개소일 : 2009. 2. 1.

바.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금1,608,087천원('21년 예산)

- 사무관리비 : 50,000천원
- 민간위탁금 : 1,493,087천원
- 민간위탁사업비 : 65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의 위탁)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윤나영 (☎ 2133-5163)